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 #################################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두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6.05.(수)	2024.06.10.(월)	2024.06.13.(목)	2024.06.14.(금)~2024.06.18.(화)	2024.06.20.(목)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

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П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05.(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29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4.0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283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6.05(수)	2024.06.13.(목)	2024.06.14.(금)~2024.06.18.(화)	2024.06.20.(목)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PC·모바일) 청약홈	공고문 7페이지 참조	공고문 8페이지 참조
장 소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	1길 12, 한양타워 10층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동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6415호(2024.06.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2길 78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지상 59층 4개동 총 1152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 [일반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최초 입주개시 2023.06.03. (금회 공급분은 **2024.06.20. 계약체결일 이후, 잔금 납부완료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Ш

(단위 : m², 세대)

주택	주택경급면적(m²) 기타 구택형 아니프리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관리번호	모델	구작성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세대수
2024930029	01	084.9700A	84A(A1)	84.9700	36.1900	121.1600	53.4700	174.6300	11.8817	1	1
		합 계								1	1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 0.3025 또는 m' ÷ 3.3058)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즈태청/²\	약식표기	아파트 공급금액(A) 동 호			ᄎᆚᆸᆌᄸᆌᄵ	7ll (A . D)	계약금(20%)	잔금(80%)	
주택형(m²) 약식표	학식표기	<u> </u>	대지비	건축비	계	추가부대경비(B)	계(A+B)	계약시	2024.07.31.까지
084.9700A	84A(A1)	101-3706	426,400,000	639,600,000	1,066,000,000	6,100,000	1,072,100,000	214,420,000	857,68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세금, 관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계약금,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자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무상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승계 거부 시 계약 불가)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의거)

■ 발코니확장 계약금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동호수	주택형 (약식표기)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2024.07.31까지	на
101-3706	84A(A1)	발코니확장	12,000,000	2,400,000	9,600,000	

※[발코니확쟁], [무상옵션]은 아파트 공급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계약 사항이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추가 선택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국민은행	771337-01-010234	보성산업개발(주)	

-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해당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시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경우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가 기 시공되어 있어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없이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옵션 및 유상옵션 추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13.(목) ~ 2024.06.22(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문자	- 제공일시 : 2024.06.1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0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접수처 비치, 무주택 인증서류(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인터넷(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 생략 인터넷(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제출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E 111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0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 복무군인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0		위임장	본인	접수처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네니진 신청시	0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추가사항	0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5.)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여부, 세대원 관계확인, 기산일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인지세법」제8조 개정(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에 따라 과세문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 계약서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의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지세 등의 모든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6.20.(목) 10:00~16:00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2, 한양타워 10층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함.
- \mid \times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0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영수증	-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Ο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Ο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외국인의 경우 서명인증서	
	Ο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	
	Ο		전자수입인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지사이트,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가능)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Ο		위임장	계약자 및 대리인	계약체결 장소 별도 비치	
	0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및 대리인	본인발급용에 한하며, 대리발급분은 불가 (계약진행 불가)	
	0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여부, 세대원 관계확인,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ΙX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 및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장, 학교, 주변상가, 주변 건축물, 도로 등 기존 주변시설물의 의한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지세 등의 모든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연체료 완납 이전에(또는 완납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등기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 요청 이전에 공급대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선이행하여야 함.
- 키불출은 잔금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잔금 납부 기일은 2024,07,31(수)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잔금납부일 2024.07.31(수)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키불출일) 또는 2024.07.31(수)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9.04.05.)을 준용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른 계약취소 후 재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 당 사업지는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준공(2023.06.02) 직후 상태 그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무상옵션 발코니 확장 등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 거부 시 분양계약 불가)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이 경우 공급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제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만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산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만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시업자가 그 소속 그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정조제3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정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러면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에서 이상의 직계존수에 무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보양자 투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보양자 투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약도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구부모양자 무명공급 신청자 제외) - 가검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약보는 발보를 3개월 이내에 이를 벌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조도 및 제3조에 따라 건축하고 또는 요구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조도 및 제3조에 따라 건축하고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는 수위의 및 전용 소유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10. 제2가조제5항 및 제28조제10형제1호에 따라 입작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11. 엄자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메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면,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이 해당하는 경우. 제외의 12. 무주택계대구상원인 임자인 현재 가격수하고 있는 임자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는 구작가격이 1억호면의 8차집급미된 기원 기원 기원을 모하는 경우 가는 구전용면적이 8차집급미된 구당 경우 함께 가격을 가격한 경우 다는 가격 등에 취득 10차인 무단 공약 기원 인상이 등을 취득 보안 경우 의원 이하이라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는 감작하는 경우 전략을 구한 경우 모든 보다 되는 일본 및 의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는 감작하는 경우 등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리조약의 건축으로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자 안내

■ 소비자피해보상

ΧĪ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의 2. 동법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쓰레기분리수거장, 쓰레기집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 공간, 관리사무소 등

■ 주차장 차로

• 주차창 출입구의 높이 2.30m	• 주차창 차로의 높이 2.30m	• 주차창 출입구의 높이 2.30m
---------------------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1	시공사2
법인명	보성산업개발(주)	㈜한양	㈜비에스산업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12(대의동, 5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구월동, 일류빌딩)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9
사업자등록번호	408-81-88422	110-81-14611	408-81-98916

- 분양관련문의 : 02-721-8944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2:3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계약 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의 방문 점검을 진행 예정
- |■ 본 주택은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건물 보존등기 완료로 분양보증기간 종료
- 분양대금의 납부가 납부지정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일수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80%는 실 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납부 마감일인 **2024. 07. 31.**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의 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04.05.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에 따른 계약취소 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